

1. 개정 이유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6조 신설, 제8조 개정)

현행 「도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조문(제6조 신설) 및 별지 서식과 함께 2)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제8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 제3호 또는 제4호**”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
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2.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3. 도선사 면허증(1급 도선사 승급일 포함)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선구의 명칭		면허 등급	
면허일자		면허증 유효기간	부터 까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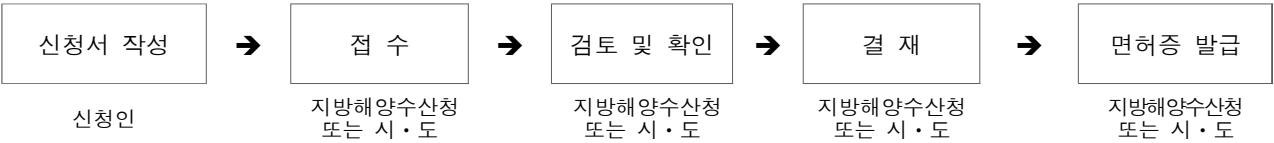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붙임 서류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1부 - 도선사 면허증(1급 도선사 승급일 포함)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1. 면허증번호 :
2. 도선구 명칭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지정기간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시 · 도 지 사

직인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0일
청구인	성명 / 상호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개요	손실 내용 및 신청 이유	
	손실금액의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청구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손실보상 일수		
	손실보상 신청금액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귀하

신청인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 등)</u>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2.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3. 도선사 면허증(1급 도선사 승급일 포함)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u>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u>	<u>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 제3호 또는 제4호</u> <u>----- 별지 제</u> <u>8호서식-----</u> <u>-----</u>

현행	개정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u>법 제13조제1항제3호</u>에 따 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관할 지 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 2월 15일까지 <u>별지 제7호서식</u>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 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 ----- ----- <u>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u>----- ----- ----- -----. ② ----- ----- ----- <u>별지 제9호서식</u>----- ----- ----- -----. 1. ~ 3. (현행과 같음)